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2016년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.5% 인상하였으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,
- 안정적 재원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 요금 추가 인상
 - 당초 :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.5% 인상
 - 개정 :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.5% 추가 인상(2019년 10%, 2020년 7.5%, 2021년 7.5%)(안 별표 2, 별표 4)
 -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(원/m³당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종 우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,
- 세입감소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,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

시민 및 기업의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요금
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